##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54 발의연월일 : 2020. 11. 2.

발 의 자:양금희·김영식·지성호

김기현 • 유의동 • 서일준

윤창현 • 윤두현 • 김예지

태영호 · 이주환 · 송언석

전봉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.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, 현재는 '심판-조정 연계제도'의 부재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.

이에 「발명진흥법」 '심판-조정 연계제도'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 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51조의2 및 제216조제1 항제4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8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##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1조의2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) ①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할 수 있다.

-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 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, 조정이 성립 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2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51조의2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, 심사, 이의신청,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관한 적용례) 제151조의2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
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51조의2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) ①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할수 있다.
제216조(상표등록출원·심사·심판	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면,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) ① 상표등록출원, 심사, 이의신청, 심판 또는 재심에 관 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등에	관한	서류의	반출과	공개
금지)	1		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51조의2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, 심사, 이의신청,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
- ② (현행과 같음)